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1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외부감사인	☆☆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

2. 조치내용

○ 공인회계사 □□□
- 직무정지 1년

○ 공인회계사 ◇◇◇
- 직무일부정지 6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☆☆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>

○ **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㈜OOO의 제20기('20.1.1.~'20.12.31.)부터 제22기('22.1.1.~'22.12.31.)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, ❶재고자산 목록 완전성 검토 미수행, ❷재고자산실사리스트와 수불부 대사 미수행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등